

퇴원준비 가이드북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기



Contents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눈에 살펴보기 · 5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 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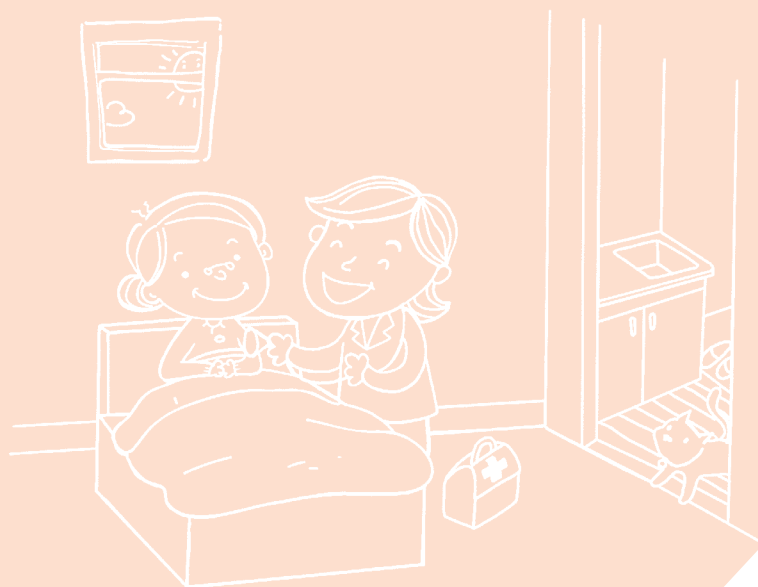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 23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하기 · 4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눈에 살펴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눈에 살펴보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 목적

- 고령(65세 이상)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자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약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사회보험제도임

● 보험 적용 대상 및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법률상 가입이 강제이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하여 징수함(따로 분리하여 납부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6.55%**



Tip 관련 용어 설명

- 수급자 :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당사자를 말함
- 급여 : 서비스 내용을 말함(예, 방문요양, 주간보호센터 이용 등)
- 요양보호사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
- 장기요양기관 : 재가, 시설급여 등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1 신청

● 신청 대상

-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분
 - ※노인성 질병 :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등
- 발병 후 3개월 경과 후 신청

● 신청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첨부)
- 65세 미만의 경우 의사 소견서
- 가족이 대리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사본)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방문 및 팩스 접수

2 인정조사

● 조사 방법 : 공단 직원(치료사, 간호사 등)이 직접 신청자 방문 조사

● 조사 내용 : 신체, 인지, 행동, 간호, 재활 등의 각 영역을 조사하여 인정점수 산정

3 등급판정 및 결과통지

- **판정방법** : 인정조사 결과, 의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 **결과통지** : 등급판정 심의 완료 후 즉시 통보(미수급자에게도 별도 통지)
- **등급판정**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기요양 인정점수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	45점 이상 51점 미만

서비스 이용

구분	서비스 유형	내용
재가급여	방문 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목욕, 화장실 이용, 취사, 청소 등 일상생활을 도움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보호하여 목욕, 식사, 간호 등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휠체어, 침대, 이동변기 등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 혹은 대여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요양시설(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 그외에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 **비용** :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20% 본인 부담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기

1 신청 대상

- **자격**: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발병 후 기간**: 발병 3개월 후 신청

Tip 노인성 질병

- 치매, 뇌내출혈, 뇌경색증, 뇌중풍,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2 신청서류

● 신청 종류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서류
신규(인정)신청	처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할 때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신청이 기각된 경우 • 유효기간이 종료된 경우 • 등급외 판정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서식 1) - 의사소견서(서식 2)
갱신 신청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종료일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 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 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	급여종류나 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 내용 변경 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 신청서 - 사실확인서(필요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 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 이의신청서(서식 3) - 사실 입증서류

● 신규 신청

서류명	작성(발급) 대상	작성(발급) 기관	비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모든 신청자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작성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신청자	입원 혹은 통원치료 중인 병원	* 유료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재신청 및 변경 신청

■ 재신청

- 장기요양을 신청했으나 인정(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음
-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

-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심신의 기능상태가 호전 또는 악화된 경우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
- 최초 신청할 때와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

● 이의 신청

■ 이의신청이란?

장기요양 등급이나 급여 비용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단순 질의, 민원 신청, 진정, 제도개선 등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결정

-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에 결정(각하, 기각 또는 인용 결정)

■ 이의신청 불복

-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은 할 수 없음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 심사청구서와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서식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신청종류 선택(신규, 갱신, 변경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① 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신청인 (본인)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민등록지		
	⑤ 실제거주지		
	⑥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호자	⑦ 성명	⑧ 신청인과의 관계	⑨ 전화번호
대리인	⑩ 성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소		
	⑬ 전화번호	휴대전화	
	⑭ 유형 ⑮ 유형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⑯ 변경신청서 사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1.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추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증명서류(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대리인 관련서류 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지정서		

입원하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병원 주소 입력

환자와 보호자 관계 표시

[(210mm × 297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서식 2〉 의사소견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9)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

의사소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담당의사가 적지 않습니다. (제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 담당의사는 소견서 내용에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소	(전화번호)	
발급 구분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자	<input type="checkbox"/> 65세 미만자	

※ 65세 미만자에 한하여 기입하며, 해당하는 질병에 √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input type="checkbox"/> F00
	나. 혈관성 치매	<input type="checkbox"/>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input type="checkbox"/>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input type="checkbox"/> F03
	마. 알츠하이머병	<input type="checkbox"/> G30
	바. 지주막하출혈	<input type="checkbox"/> I60
	사. 뇌내출혈	<input type="checkbox"/>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nput type="checkbox"/> I62
	자. 뇌경색증	<input type="checkbox"/>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nput type="checkbox"/>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nput type="checkbox"/> I65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nput type="checkbox"/> I66
	파. 기타 뇌혈관질환	<input type="checkbox"/>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nput type="checkbox"/> I68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nput type="checkbox"/> I69
	너. 파킨슨병	<input type="checkbox"/> G20
	더. 이차성 파킨슨증	<input type="checkbox"/>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input type="checkbox"/>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input type="checkbox"/> G23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input type="checkbox"/> U23.4
서. 진전(振顫)	<input type="checkbox"/> U23.6	

※ 1)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 신청인이 다른 진단서 등에 의해 노인성 질병임을 이미 진단받아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 진단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65세 미만자 중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고,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뒷면의 사항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3) 상기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찰료 등 심비는 공단외 부담하지 아니하고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상기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진찰료 외에 진단에 드는 검사비용 등은 신청인(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노인성 질병의 진단은 위 진단표 이외에 진단서 등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210mm [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제2쪽 앞면)

나. 정신상태

1) 인지기능

의사소통 능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부분적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단기 기억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장기 기억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장소 지남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판단력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장애	<input type="checkbox"/> 심한 장애

*** 장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2) 문제행동 유무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망상	<input type="checkbox"/> 환각	<input type="checkbox"/> 수면장애	<input type="checkbox"/>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함
	<input type="checkbox"/> 길을 잃음	<input type="checkbox"/> 공격적, 파괴적 행동	<input type="checkbox"/> 밖으로 나가려 함	<input type="checkbox"/> 돈/물건 등 감추기
	<input type="checkbox"/> 부적절한 옷 입기	<input type="checkbox"/> 불결한 행동	<input type="checkbox"/> 거부증	<input type="checkbox"/> 우울 기분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특이 증상:			

다. 일상생활 자립도

장애노인	<input type="checkbox"/> 정상	<input type="checkbox"/> 생활자립	<input type="checkbox"/> 준 외상상태	<input type="checkbox"/> 완전 외상상태
치매노인	<input type="checkbox"/> 자립	<input type="checkbox"/> 불완전자립	<input type="checkbox"/> 부분의존	<input type="checkbox"/> 완전의존

3. 의료적 처치 필요항목

기관지 절개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도뇨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육창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장루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경관 영양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당뇨발 및 그에 준하는 피부질환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암성 통증 및 그에 준하는 통증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기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비고					

※ 해당 항목의 중증도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 r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예시) • 통증 : 부위, 통증조절방법, 원인
- 육창 : 피부질환 : 부위, 경과 등

〈서식 3〉 이의 신청서

공단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이의신청하는
처분내용
(등급, 비용...)

해당 처분을 한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명

이의신청하는
구체적 내용과
이의신청을 하게 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근거가 되는 내용 기록

[별지제32호서식] <개정 2008.6.11>

(앞면)

이의 신청서			
신청인 (처분을 받은 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번호)	
④처분의 요지	(처분을 한 분사무소:)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⑤처분이 있는(도달한) 날	년	월	일
⑥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여백부족시 별지 사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 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3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 발급 대상

-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은 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별도 통보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공단의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는 자는 발급 시 본인 부담 비용만 부담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우선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하고, 나중에 공단부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음(본인이 별도로 청구할 필요 없음)
- 단, 최초신청이나 갱신신청 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등급변경 신청 후 등급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임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소견서(1회당)	34,040원	21,170원
의사소견서 (치매 진단 관련 보완서류, 1회당)	50,000	39,310원

● 본인 부담율

	일반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3조1항 1호 외의 규 정에 따른 의료급여자	「의료급여법」 제3조1항 1호의 규정 에 따른 의료급여자
최초 신청, 갱신 신청	20%	10%	10%	-
재신청	전액 본인 부담			

4 신청 기관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 병원 입원 중일 경우 병원 소재 지사에 신청 가능함
 - 예) 강원도 춘천시 거주, 국립재활병원(서울 강북구) 입원 중
 - ➔ 서울 강북지사에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

Q&A

Q1) 등급변경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신청서와 함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함

Q2)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A) 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이라도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Q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의사소견서 발급 시 우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신청이나 갱신 신청하여 인정등급을 받거나 등급변경 신청하여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비용이 자동 환급됨

Q4)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은 무엇인가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은 수급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최소 1년부터 최대 4년 6개월까지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계속해서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기간에 갱신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갱신신청은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함)

Q5)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도 갱신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 장기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부여됨. 그러나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된 이후 또는 만료되기까지 3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갱신신청으로 볼 수 없고, 다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새로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다시 유효기간이 시작됨(그 사이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

Q&A

Q6)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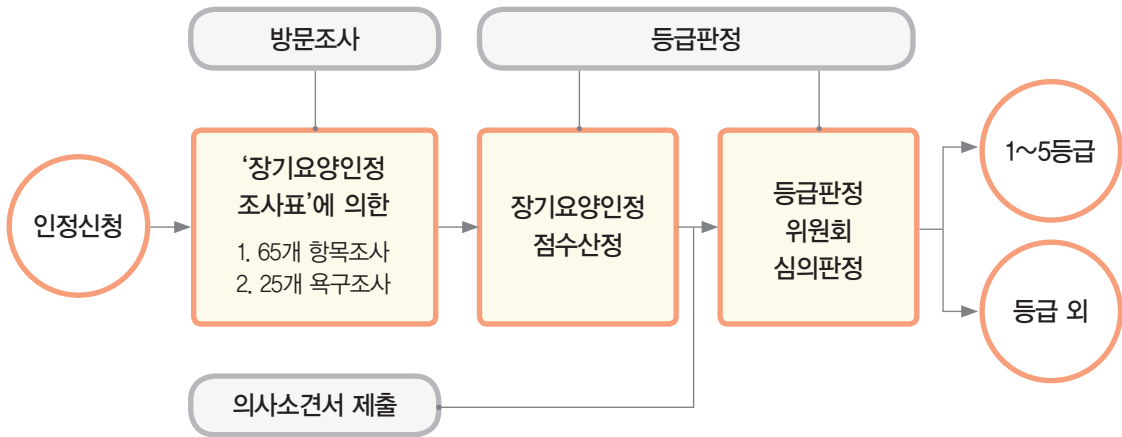
A)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음(단, 산업연수생(D-3), 비전문취업(ㄱ-9), 방문취업(ㄷ-2) 등의 자는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받기



1 노인장기요양 인정조사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직접 병원이나 집을 방문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함

- **조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입원 시 병원) 방문 조사
 -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에 통보하며, 공단 직원과 협의하여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조정 가능함
- **조사 내용** : 일상생활활동,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환자의 기능 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 욕구 등

※ 인정조사 항목

<p>신체기능(12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벗고 입기 - 식사하기 - 일어나 앉기 - 화장실 사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수하기 - 목욕하기 - 옮겨앉기 - 대변 조절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치질하기 - 체위변경하기 - 방밖으로 나오기 - 소변 조절하기 	
<p>인지기능(7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기억장애 - 날짜 불인지 - 장소 불인지 - 나이/생년월일 불일치 - 지시 불인지 - 상황판단력 감퇴 - 의사소통/전달장애 			
<p>행동변화(9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망상 - 환청, 환각 - 슬픈 상태, 울기도 함 -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 도중에 저항 -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 길을 잃음 - 폭언, 위협행동 - 밖으로 나가려 함 - 의미가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 물건 망가뜨리기 - 돈/물건 감추기 - 부적절한 웃입기 - 대/소변 불결행위 			
<p>간호처치(9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지 절개관 간호 - 흡인 - 산소요법 - 경관영양 - 욕창간호 - 암성통증간호 - 도뇨관리 - 장루간호 - 투석간호 			
<p>재활(10항목)</p>	<p>운동장애(4항목)</p>		<p>과절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상지 - 좌측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측하지 - 좌측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관절 - 고관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꿈치관절 - 무릎관절

〈서식 4〉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쪽 앞면)	
1. 일반사항						
① 구분	[] 장기요양인정신청	[] 갱신신청	[] 등급변경신청	[] 이의신청		
② 조사원	성명			소속(지사)		
	조사장소			조사일시		
③ 신청인 (본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도시·벽지 대상자	[] 도서지역 [] 벽지지역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보호자 또는 주수 발자 성명(관계)	()		보호자 또는 주수발 자 전화번호		
④ 참석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전화번호	
⑤ 주거상태	[] 자택 [] 노인요양시설 [] 단기보호시설 [] 양로시설 [] 요양병원 [] 기타 병·의원 [] 기타()					
⑥ 동거인	현재 신청인과 동거하는 자에 대해 복수체크 가능					
⑥ 동거인	[] 독거 [] 손자녀	[] 부부 [] 친척	[] 부모 [] 친구·이웃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입소시설관계자 [] 기타()		
⑦ 현재 받고 있는 급여 (과거 3개월간 평균 횟수·일수 기록)	재기급여	[] 방문요양(회/주) [] 방문간호(회/주) [] 단기보호(일/주)		[] 방문목욕(회/주) [] 주·야간보호(일/주) [] 복지용구(구입·대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그 밖의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가사간병방문도움 [] 보건소사업() [] 개인간병인 [] 치매상담센터 [] 기타()				

	현재 신청인이 희망하는 급여에 대해 복수체크 가능		
⑧ 희망급여종류	재가급여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구입·대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1순위 희망급여종류 및 내용		
⑨ 등급의 판정 시 희망 서비스 (등급의 판정 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노인돌봄서비스 [] 치매상담센터 [] 급식 및 도시락 반찬 [] 활동보조 [] 말벗	[] 보건소 사업 [] 주거개선사업 [] 건강운동교실 [] 목욕·이미용 [] 기타()	[] 노인 일자리 사업 [] 무료진료연계 [] 가시간병방문도움 [] 여가, 문화, 교육 [] 거부
⑩ 등록장애	※장애의 종류 및 등급 기록		
(참고사항)			
210mm×297mm[백상지 80g/m ²]			
(제쪽 뒷면)			

2. 장기요양인정·욕구사항

○ 신청인의 기능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다음의 해당란에 √표 체크

○ 각 항목 아래의 빈칸에 특기사항을 기록

가.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 영역

1)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에 √표로 표시함

항목	기능자립정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① 옷 벗고 입기			
② 세수하기			
③ 양치질하기			

④ 목욕하기					
⑤ 식사하기					
⑥ 체위 변경하기					
⑧ 옮겨 앉기					
⑨ 방 밖으로 나오기					
⑩ 화장실 사용하기					
⑪ 대변 조절하기					
⑫ 소변 조절하기					
⑬ 머리감기					

2) 일상생활 자립도

장애노인(와상도)	[] 정상	[] 생활 자립	[] 준 와상 상태	[] 완전 와상 상태
치매노인(인지증)	[] 자립	[] 불안전 자립	[] 부분 의존	[] 완전 의존

※ 신청인의 평소 일상생활 자립정도를 종합하여 각각의 항목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제2쪽 앞면)

나. 사회생활기능(수단적 일상생활 기능)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란에 √표로 표시함

항목	기능 자립 정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① 집안일 하기			
② 식사 준비하기			
③ 빨래하기			
④ 금전 관리			
⑤ 물건 사기			
⑥ 전화 사용하기			
⑦ 교통수단 이용하기			
⑧ 근거리 외출하기			
⑨ 몸 단장하기			
⑩ 약 챙겨먹기			

다. 인지기능 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항목	증상여부	
	예	아니오
① 방금 전에 들었던 이야기나 일을 잊는다.		
②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른다.		
③ 자신이 있는 장소를 알지 못한다.		
④ 자신의 나이와 생일을 모른다.		
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⑥ 주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떨어져 있다.		
⑦ 의사소통이나 전달에 장애가 있다.		
⑧ 계산을 하지 못한다.		
⑨ 하루 일과를 이해하지 못한다.		
⑩ 가족이나 친척을 알아보지 못한다.		

(제3쪽 앞면)

라. 행동변화영역

최근 한 달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보였던 증상에 √표로 표시함.

항 목	증 상 여 부	
	예	아니오
① 사람들이 무엇을 훔쳤다고 믿거나 자기를 해하려 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		
②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듣는다.		
③ 슬퍼 보이거나 기분이 처져 있으며 때로 울기도 한다.		
④ 밤에 자다가 일어나 주위 사람을 깨우거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난다. 또는 낮에는 지나치게 잠을 자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⑤ 주위사람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⑥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 갔다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⑦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외출하면 집이나 병원, 시설로 혼자 들어올 수 없다.		
⑧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⑨ 혼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땔 수가 없다.		
⑩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⑪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자주 보인다.		

㉓ 돈이나 물건을 장롱같이 찾기 어려운 곳에 감춘다.		
㉔ 옷을 부적절하게 입는다.		
㉕ 대소변을 벽이나 옷에 바르는 등 행위를 한다.		
㉖ 가스불이나 담뱃불, 연탄불과 같은 화기를 관리할 수 없다.		
㉗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한다.		
㉘ 이유 없이 크게 소리치고 고함을 친다.		
㉙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한다.		
㉚ 음식이 아닌 물건 등을 먹는다.		
㉛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참견한다.		
㉜ 식습관 및 식욕변화를 보이거나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한다.		
㉝ 귀찮을 정도로 붙어 따라 다닌다.		

(제3쪽 뒷면)

마. 간호처치 영역

최근 2주간의 상황을 종합하여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항목	증상 유무		항목	증상 유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① 기관지 절개관 간호			⑥ 암성통증 간호		
② 흡인			⑦ 도뇨(導尿) 관리		
③ 산소요법			⑧ 장루 간호		
④ 욕창 간호			⑨ 투석 간호		
⑤ 경관 영양			⑩ 당뇨발 간호		

※ 암성통증 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통증이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
 ※ 당뇨발 간호에 해당되지 않는 상처가 있을 경우 특기사항에 기록함.

바. 재활 영역

반드시 각 항목을 직접 신청인이 수행하도록 한 후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항목	운동장애 정도		
	운동장애 없음	불완전 운동장애	완전 운동장애
① 우측상지			
② 좌측상지			
③ 우측하지			

④ 좌측하지			
⑤ 어깨관절			
⑥ 팔꿈치관절			
⑦ 손목 및 수지관절			
⑧ 고관절			
⑨ 무릎관절			
⑩ 발목관절			

사. 복지용구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복지용구에 √표로 표시함.

용구	보유	희망	용구	보유		희망	
				구입	대여	구입	대여
① 이동변기			⑩ 수동휠체어				
② 목욕의자			⑪ 전동침대				
③ 성인용 보행기			⑫ 수동침대				
④ 안전손잡이			⑬ 욕창예방 매트리스				
⑤ 미끄럼 방지용품*			⑭ 이동 욕조				
⑥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⑮ 목욕리프트				
⑦ 지팡이			⑯ 배회감지기				
⑧ 욕창예방 방식			⑰ 경사로				
⑨ 자세변환 용구							

* 미끄럼 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신청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급여이용을 희망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견이 있다면 특기사항에 기록함.

아. 지원형태		
① 주 수발자	[] 없음 [] 배우자 [] 부모 []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 손자녀 [] 친척 [] 친구·이웃 [] 간병인 [] 자원봉사자 [] 기타()	
② 주 수발자의 도움영역	[] 신체기능 [] 사회생활기능 [] 정서적 지지	
③ 하루 종일 혼자 있음	[] 예	[] 아니오
자. 환경 평가		
주거 상황이 건강에 해롭거나 지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지 평가 (조명, 바닥 상태, 욕실 및 화장실 환경, 부엌 환경, 냉방과 난방, 개인안전, 환기 등)		
① 조명(눈부심, 그림자, 스위치 위치 등)	[] 양호 [] 불량	
② 바닥과 벽지 (마룻바닥, 벽지상태)	[] 양호 [] 불량	
③ 계단(계단 난간 위치)	[] 양호 [] 불량	
④ 주방(가스기구, 조리기구 위치)	[] 양호 [] 불량	
⑤ 문턱 여부(현관, 방, 화장실)	[] 양호 [] 불량	
⑥ 난방과 환기(적정수준의 온도와 환기)	[] 양호 [] 불량	
⑦ 화장실 세면대 설치 여부	[] 유 [] 무	
⑧ 좌변기 여부	[] 유 [] 무	
⑨ 온수 여부	[] 유 [] 무	
⑩ 욕조 여부	[] 유 [] 무	

(제4쪽 뒷면)

차. 시력·청력상태

① 시력상태	<input type="checkbox"/> 가. 정상 <input type="checkbox"/> 나. 1미터 떨어진 달력은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다. 눈앞에 근접한 글씨는 읽을 수 있으나 더 먼 거리는 보이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라. 거의 보이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마. 보이는지 판단 불능
② 청력상태	<input type="checkbox"/> 가. 정상 <input type="checkbox"/> 나. 보통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못 듣기도 한다. <input type="checkbox"/> 다.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라. 거의 들리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마. 들리는지 판단 불능

카. 질병 및 증상

신청인이 현재 앓고 있는 질병 또는 증상에 대해 해당 란에 √표로 표시함

① 질병 및 증상	<input type="checkbox"/> 가. 없음 <input type="checkbox"/> 나. 치매 <input type="checkbox"/> 다. 중풍 (뇌졸중) <input type="checkbox"/> 라.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마.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 <input type="checkbox"/> 사. 요통, 좌골통(디스크탈출증, 척수관협착증) <input type="checkbox"/> 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심부전, 만성폐질환, 천식) <input type="checkbox"/> 자. 난청 <input type="checkbox"/> 차. 백내장, 녹내장 등 시각 장애 <input type="checkbox"/> 카.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input type="checkbox"/> 테. 암 (진단명:) <input type="checkbox"/> 페. 기타 (진단명:)
-----------	--

② 주요 질병 및 증상

①에서 파악된 내용 가운데 신청인의 현재 기능상태 저하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비중이 높은 항목 한 가지만 √표로 표시함

<input type="checkbox"/> 가. 치매 <input type="checkbox"/> 나. 중풍 <input type="checkbox"/> 다. 치매 + 중풍 <input type="checkbox"/> 라. 고혈압 <input type="checkbox"/> 마. 당뇨병 <input type="checkbox"/> 바. 관절염 <input type="checkbox"/> 사. 요통, 좌골통 <input type="checkbox"/> 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호흡곤란 <input type="checkbox"/> 자. 난청 <input type="checkbox"/> 차. 백내장, 녹내장 등 시각 장애 <input type="checkbox"/> 카. 골절, 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input type="checkbox"/> 테. 암 <input type="checkbox"/> 페. 기타 (진단명:) ※1가지 진단명만 적으십시오.

2 노인장기요양 등급

● 등급 판정 과정

단계	내용	세부 내용	비고
1단계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원점수 조사	- 기능자립정도 : 완전자립(1점), 부분도움(2점), 완전도움(3점) - 증상여부 : 있음(1점), 없음(0점) - 운동장애 정도 : 없음(1점), 불완전 운동장애(2점), 완전 운동장애(3점)	
			
2단계	영역별 점수의 합계 구함	- 1단계에서 실시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 결과를 기초로 「영역별 조사항목 원점수표」에 의하여 해당 항목별 점수의 합을 구함	원점수표 (표 1)
			
3단계	영역별 100점 점수로 환산하기	- 2단계에서 계산한 「영역별 점수 합계」를 「영역별 100점 득점 환산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으로 환산하여 산정	환산 점수표 (표 2)
			
4단계	8개 서비스군별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산정 및 합계	- 1단계에서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 조사결과와 3단계에서 산출한 영역별 100점 환산 점수를 가지고 8개 서비스군별 수형 분석도에 적용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한 후 합을 구함	8개 서비스군
			
5단계	장기요양 등급 결정	-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결정	등급판정 기준표 (그림 1)

〈표 1〉 조사항목별 원점수표

영역	항목	기능자립정도			증상여부		운동장애 정도			관절 제한 정도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예	아니오	운동 장애 없음	불완전 운동 장애	완전 운동 장애	제한 없음	한쪽 관절 제한	양관절 제한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1	2	3								
	세수하기	1	2	3								
	양치질하기	1	2	3								
	식사하기	1	2	3								
	목욕하기	1	2	3								
	체위 변경하기	1	2	3								
	일어나 앉기	1	2	3								
	옮겨 앉기	1	2	3								
	방밖으로 나오기	1	2	3								
	화장실 사용하기	1	2	3								
	대변 조절하기	1	2	3								
	소변 조절하기	1	2	3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1	0						
	지시 불인지				1	0						
	날자 불인지				1	0						
	상황 판단력 감퇴				1	0						
	장소 불인지				1	0						
	의사소통·전달장애				1	0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1	0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1	0						
	서성거림, 안절부절 못함				1	0						
	물건 망가뜨리기				1	0						
	환각, 환청				1	0						
	길을 잃음				1	0						
	돈/물건 감추기				1	0						
	슬픈 상태, 울기도 함				1	0						
	폭언, 위협행동				1	0						
	부적절한 웃입기				1	0						
	불규칙 수면, 주야혼돈				1	0						
	밖으로 나가려 함				1	0						
	대/소변 불결행위				1	0						
	도움에 저항				1	0						
	의미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1	0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1	0						
	경관 영양				1	0						
	도뇨관리				1	0						
	흡인				1	0						
	욕창간호				1	0						
	장루간호				1	0						
	산소요법				1	0						
	암성통증간호				1	0						
	투석관리				1	0						
재활 (10항목)	우측상지						1	2	3			
	우측하지						1	2	3			
	좌측상지						1	2	3			
	좌측하지						1	2	3			
	어깨관절									1	2	3
	팔꿈치관절									1	2	3
	손목 및 수지관절									1	2	3
	고관절									1	2	3
	무릎관절									1	2	3
	발목관절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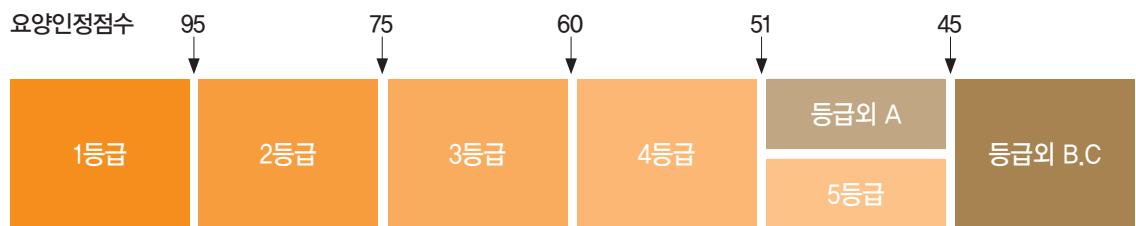
〈표 2〉 100점 환산 점수표

신체기능(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원점수	환산점수
12	.00	0	.00	0	.00	0	.00	10	.00
13	13.19	1	19.71	1	15.58	1	19.84	11	11.51
14	22.24	2	33.81	2	25.55	2	36.90	12	19.43
15	28.04	3	44.61	3	32.10	3	47.84	13	24.72
16	32.38	4	54.78	4	37.29	4	55.81	14	28.93
17	35.92	5	65.71	5	41.80	5	62.53	15	32.62
18	38.96	6	80.06	6	45.96	6	68.98	16	36.06
19	41.68	7	100.00	7	49.94	7	76.11	17	39.46
20	44.18			8	53.93	8	85.86	18	42.96
21	46.52			9	58.08	9	100.00	19	46.69
22	48.76			10	62.59			20	50.72
23	50.93			11	67.80			21	54.97
24	53.06			12	74.37			22	59.20
25	55.17			13	84.37			23	63.19
26	57.30			14	100.00			24	66.93
27	59.46							25	70.53
28	61.71							26	74.16
29	64.06							27	78.07
30	66.59							28	82.75
31	69.36							29	89.57
32	72.50							30	100.00
33	76.22								
34	81.02								
35	88.40								
36	100.00								

* 8개 서비스군

청결	세면도구,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기타 청결관련 서비스
배설	설사 등 보조, 배뇨도움, 배변도움, 지저귀 교환, 기타 배설관련 서비스
식사	상차리기, 식사보조, 음료수 준비, 기타 식사관련 서비스
기능보조	일어나 앉기, 서있기 연습도움, 기구사용 운동보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 유지 등 기능보조
행동변화대응	배회, 불결행위, 폭언 등 행동변화에 대한 대처, 그 밖의 행동변화에 대응
간접지원	청소, 세탁, 설거지, 요리 및 식사준비, 의사소통, 침구관련 교환, 환경관리, 주변정돈, 장보기
간호처치	관찰 및 측정, 투약 및 주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간호, 온냉요법, 배설간호, 약사진료보조, 기타 간호처치
재활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기타 기능훈련

<그림 1> 등급판정 기준표



● 등급 판정 기준

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기요양 인정 점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45점 이상 51점 미만

● 등급 외 판정

등급 기준	기능 상태	요양 점수
등급 외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해서 자립 - 목욕하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의 도움 - 수발자 없이 장시간 혼자 집안에 머무는 것이 가능 - 종이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 등 복지관 이용이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떨어져 있음 	45점 이상 51점 미만
등급 외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이동은 자립, 실외이동도 자립 비율이 높음 - 일상생활은 목욕하기 등에서 약간의 도움, 대부분은 자립 - 만성관절염 호소, 복지관 이용 가능 - 단기기억 장애나 판단력 장애 등 인지력이 약간 떨어져 있음 - 문제행동도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목욕하기 등의 어려운 항목에서 약간 도움, 복지관 이용 가능 	40점 이상 45점 미만
등급 외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기능이나 인지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건강증진 등 필요한 대상임 	40점 미만

●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지역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대상	비고
시 군 구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대상 '가족휴가제' 실시	- 가사활동지원, 주야간보호, 단기가사 서비스 ※본인부담금 : 무료~ 64,000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한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호 필요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 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무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 만 65세 이상 실제 홀로 사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노인 *1순위 : 치매 또는 치매 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 검사 의뢰자) *2순위 : 노인장기요양서비스(재가) 및 방문보건 서비스 이용자 등 건강상태가 취약한자	-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하여 독거노인의 응급 상황에 신속 대처
	독거노인 사랑잇기 서비스	- 기본서비스 예비 대상자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독거노인 ※단 후원물품과 후원금품 지원의 경우 기본 대상자 지원 가능	- 민간의 자원봉사자와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무료)
보 건 소	방문건강 관리	- 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선 건강관리	-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환자 및 질병 관리 등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어르신,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선 건강관리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본인 부담금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검진 사업	- 선별검사 : 만60세 이상 모든 노인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만60세 이상 노인 • 전국 가구 소득의 100%이하의 자 • 기타 치매 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시군구 자체 기준	- 1단계 선별검사(보건소) • MMSE-DS • 검진비 지자체 부담 - 2단계 진단검사(협약병원) • 신경인지검사,전문의 진료 등 • 검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담 - 3단계 감별검사(협약병원) • 혈액검사,뇌영상 촬영 등 • 검진비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담
	기타	- 등급 외 A, B, C	보건소 운동, 금연, 건강생활 실천 등
그 밖의 민간 단체			- 안전 확인, 말벗 등 정서지원, 여가· 문화·교육 - 주거개선사업, 급식 및 반찬서비스, 목욕·이미용, 활동보조, 가사지원 - 후원 자매결연사업 등

3 노인장기요양 인정등급 포기 제도

● 등급 포기사유 인정 범위

- 장애인 활동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타 법령에 의한 서비스(장애인일자리 사업등)를 받고자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 기타 장기요양 급여 이용 의사가 없어 기인정된 등급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 ※ 타인의 협박 등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수급권 포기는 인정 불가

● 신청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등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목적으로 기인정된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고자 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 신청자 범위 : 수급자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가족 ·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 신청서(서식 5)
- 장기요양인정서 원본 : 반환한 인정서는 포기신청 결과통보 후 파기
 - ※ 인정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분실 등 사유로 제출하지 못할 경우 ‘등급 포기 신청서’ 하단의 사유서 작성으로 대체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 ※ 우편 · 팩스로 신청할 경우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제출

● 제출장소 및 방법

- 제출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관할운영센터(전국 227개)
- 제출방법 : 방문/팩스/우편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

- 등급포기 신청서 제출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수급권 포기의 취소가 가능하며, 등급 포기의 취소는 1회에 한함
- 제출서류
 -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서식 6)
 - 신분증 사본 :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



Tip 등급 포기 이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가능 여부

- 문1) 65세 미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인정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장기요양 등급 포기 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연금에서 활동지원 급여 여부를 결정
- 문2) 65세 미만 장애인이 처음부터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등급 포기를 하더라도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음
- 문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가 된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 단서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었던가 65세 이후 노인장기 전환되어 장기요양 급여를 받던 사람은 등급포기를 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을 수 없음

〈서식 6〉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장기요양등급 포기에 대한 취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본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민등록지		
	④실제거주지 (※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⑤전화번호	휴대전화	
대리인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주소		
	⑨전화번호	휴대전화	
	⑩유형	1. 가족·친족(신청인과의 관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포기를 취소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보호자 또는 대리인 관련 서류 가. 가족, 친족 : 대리인의 신분증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

210mm×297mm[재활용품 80g/㎡]

Q&A

Q1) 1~5급 등급을 받은 자가 갱신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 결과 등급 외 판정을 통보받은 경우, 언제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갱신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으로 등급외로 판정받더라도 현재 받고 있는 급여의 인정 유효 기간 만료일까지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Q2) 장애등록 등급과 노인요양등급은 왜 등록 결과가 다른지?

A)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록은 단순히 외부신체의 장애 정도만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 하는데 비해,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심신의 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의해 등급을 판정함

Q3) 유효기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하는지?

A) 유효기간이란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인정하는 기간으로 최소 1년이며,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의 경우 2년임
※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음

Q4) 24시간 방문요양은 어떤 서비스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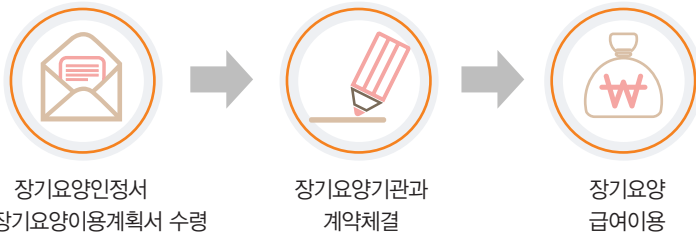
A) 치매가족휴가제의 하나로 단기보호급여를 포함하여 연간 6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음. 치매가 있는 수급자로 같은 달에 시설급여 또는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에 한함

4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하기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하기



1 장기요양인정서 등 수령하기

- **발급 기관** : 수급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공단 지사
- **수령 서류**

서류명	내용	비고
장기요양인정서	- 수급자에게 주는 증서로, 장기요양등급, 급여종류 및 내용,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등이 적혀 있음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이며, 갱신 신청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 연장됨(장기요양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함께 제시함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기재한 증서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제시함	

● 내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 내용 등 확인하기

- 장기요양 등급
- 급여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Tip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 단,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서식 7〉 노인장기요양인정서(예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3.6.10)

장기요양인정서		수급자 안내사항
성 명	김 ○ ○	
생년월일	1955. ○○. ○○	
장기요양인정번호	L0010722453-○○○	
장기요양등급	3등급	
유효기간	2016. 06. 01~ 2018. 05. 3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2016. 06. 01~ 2018. 05. 31.(재가급여)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 의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전화번호 : 02-950-8250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47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발행일자 :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법 제4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고, 그 외의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본인일부 부담금이 50% 경감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5.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63mm×127mm(백상지 150g/㎡)

요양등급 및 번호

급여종류 (재가 혹은 시설)

〈서식 8〉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예시)

장기요양인정번호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 계약 체결 시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경대상자
(기초생활 수급자)

성 명	김○○	생년월일	1955. 00. 00
장기요양등급	3등급	발급일	2016. 04. 01
재가급여(월한도액)	1월당 981,100원	본인일부 부담금 (율)	재가: 0 (기초) %
시설 급여	노인요양시설 1월당 원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월당 원		

장기요양필요영역	단기목표	중장기요양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기능 ■ 재활욕구 ■ 사회생활가능 ■ 지지체계 ■ 환경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옷 갈아입기가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예방 ■ 지원을통한수단적일상생활활동의수행 ■ 건강상태변화에 맞는적절한지지를 받는다
장기요양필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가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신체기능의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 산책동행 ■ 말벗 격려 및 위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으로 서비스,제공 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관절 구축이나 근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희망급여	방문요양	

급여 내용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급여종류	횟 수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월22회(240분이상(방문당))	원	0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합 계	원	0원
복지용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서식 9〉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예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① 수급자 일반사항			
수급자성명	김 ○ ○	생년월일	1955. 00. 00
장기요양등급	3등급	장기요양인정번호	L0010722453-000
본인 부담률	0%	유효기간	2016. 06. 01~ 2018. 05. 31
연한도액적용구간	2016. 05. 05.~2017. 05. 04. 2017. 05. 05.~2018. 05. 04		
② 복지용구 급여내용			
구분	구입품목	대여품목	
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	이동변기, 목욕의자,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			
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	목욕의자(SSS급C-S), 전동침대(WS8830), 욕창예방 매트리스(AD-1) L/V TPU		
발행일자 2016년 04월 0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전화번호 : 02-950-8250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47			
홈페이지 : www.longtermcare.or.kr			

감경대상자

복지용구
품목

2 장기요양기관 찾기 및 계약 체결하기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수급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기관 찾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
- 지역(시·군·구) 선택 ➔ 이용하려는 급여종류 선택 ➔ (상세기준 생략 가능) ➔ 기관 명단 및 현황 검색

〈그림 2〉 장기요양기관 검색(예시)

수급자 지역선택

이용하려는
급여내용 선택

Total 73(1/8 page)

번호	급여종류	평가결과	장기요양기관 (상세보기)	정원	현원	잔여	대기	전화번호	방문 목적 차량	주소	지도	블로그
1	방문 요양 (최우수) 2016 절대평가	A	○○○○강북노인 복지센터 (상세보기)	-	-	0	0	02-954-771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92 3층 (미아동)		이동
2	방문 요양 (최우수) 2014 상대평가	A	○○○노인센터 (상세보기)	-	-	0	0	02-989-9987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115 4층 (번동)		이동
3	방문 요양 (최우수) 2016 절대평가	A	○○○요양센터 (상세보기)	-	-	0	0	02-993-9356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강로122길 5 (수 유동)		이동

급여 종류

기관에 대한
평가

기관 명칭

클릭 시 기관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

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장기요양기관 선택

- 이용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 ➔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나 내용, 비용 등에 대해 상담
-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
- ※ 대도시나 시내 중심가가 아닌 농어촌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수가 많지 않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수도 있음

● 급여계약 체결

-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기관에 제시
- 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포함) 수급권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에 이용 신청 승인 후 급여 이용 가능 (※보통 장기요양기관에서 대행해 줌)

Tip 장기요양기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관할 시·도·군·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

- 재가급여제공기관 : 방문요양, 방문간호, 복지용구 등 급여 제공 기관
- 시설급여 제공기관 :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운영 기관

3 노인장기요양 급여 이용하기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배변, 머리감기, 옷 갈아입기 등) 및 가사활동(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구강위생에 한함)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 포함)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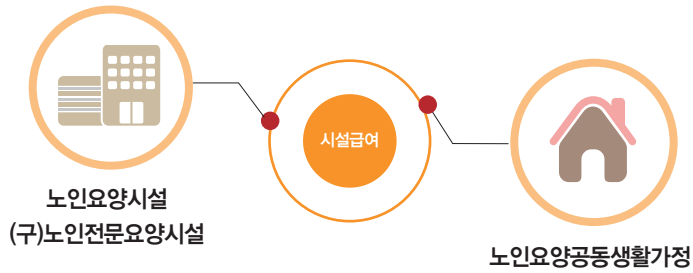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제품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 급여

※수동휠체어,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방석,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

시설급여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현물급여



Tip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전에

-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음

〉 방문요양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로, 방문간호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방문요양은 서비스의 내용이 주로 보호인의 간호보다는 요양분야에 맞추어져 있음

● 지원활동

-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목욕도움, 구강관리 등의 위생관리, 영양섭취를 위한 식사관리, 배설과 관련된 생리적 욕구를 도와주는 배설 관리,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이동도움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것이고,
 - 가사활동지원서비스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 청소, 세탁 등 급여대상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적인 가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임
- ※ 단, 보호인에게 직접 제공되는 요양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등의 관련 업무는 제외됨



● 급여 장소

- 수급자의 가정(가정집 등 사적인 공간)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의 병원방문 도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 “특별한 사유”란 수급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병원 동행, 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관공서 방문 등의 경우를 말함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방문 없이 복지관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하였다면 이는 가정방문 급여 제공 원칙에 벗어나는 것이므로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능함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지원 활동

-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 방문목욕 행위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함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

● 지원 활동

- 의과 방문간호 급여: 간호사정 및 진단,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상처 치료, 투약행위 및 투약관리 지도
- 한의과 방문간호 급여: 한약복용 지도, 좌욕
- 치과 방문간호 급여: 구강위생 관리, 잇몸상처 관리, 구강보건교육 등



● 방문간호 인력 요건

간호사	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간호조무사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이 있고,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	별도의 경력규정은 없으나,치과 위생 업무에 관한 급여만 제공할 수 있음

〉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로, 주로 이동서비스, 목욕, 급식, 간호,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등을 지원



〈표 3〉 ○○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예

구분	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주간	08:00-10:00	송영서비스(아침송영 1, 2, 3)						
	08:30-10:30	의료 및 운동재활						
		물리치료 및 신체기능회복(발맞사지, 안마기 등), 운동치료(자가운동훈련)						
	10:00-10:30	의료 및 운동재활						
		기초 건강 체크(혈압, 혈당, 체온, 맥박, 체중 등)						
	10:30-11:00	인지기능 및 정서지원						
		오전 간식 및 Tea Time Briefing(주제별, 생의주기별, 계절별 회상활동)						
	11:00-12:00	의료 및 재활						
		아침조회(지남력훈련, 현실감각훈련)/건강증진활동(새천년 건강체조, ACE's Guide Ex)						
	12:00-13:00	점심식사(개인위생관리, 투약관리) 및 휴식						
	13:00-13:30	의료 및 운동재활				인지/정서	의료/운동	
		운동치료(걷기 운동 & 치매예방운동법)				민속무용공연 (한누리예술단)	운동치료	
	13:30-14:30	인지기능 및 정서지원				의료/운동	인지기능 및 정서지원	
		인지기능훈련 (그룹활동)	작업치료 (요리교실)	미술치료	운동치료 (실버스트레칭)	종교활동 (예배/성경인물)	놀이치료 (레크레이션)	
	14:30-15:00	의료 및 운동재활						
		운동치료(자가운동훈련) 및 물리치료						
	15:00-15:30	오후 간식						
	15:30-16:30	의료/운동	인지기능 및 정서지원					
운동치료 (실버스트레칭)		음악치료 (노래교실)	민요교실	웃음치료	종이공예	음악치료 (노래교실)		
16:30-17:30	일과 정리 및 귀가 지도/송영서비스(오후 송영)							
	의료 및 운동재활							
운동치료(자가운동훈련), 물리치료 및 신체기능회복(발맞사지, 안마기 등)								
야간	17:30-18:30	저녁식사(개인위생관리, 투약관리, 휴식)/일과 정리 및 귀가 지도						
	18:30-22:00	인지기능 및 정서지원						
		인지기능 훈련 (개인별 맞춤형 학습 : 한글교실/숫자교실)						
송영 서비스(야간 송영 1, 2, 3)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지원 활동** :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 등

● 이용 기간

- 가족의 여행, 병원치료 등의 사유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1회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월 15일 이내, 연간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음
- ※ 단 월 중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 해당 월에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복지용구 급여란?

-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

● 복지용구 급여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급)

※ 단, 시설급여 수급자는 제외

● 급여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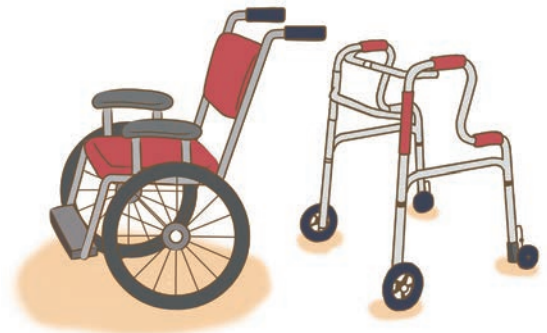
- 구입 :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
- 대여 :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 부담금(15%)을 부담하고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
- ※ 급여비용 부담율 : 일반(15%), 경감대상(7.5%), 기초생활수급자(0%)

●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 연간 한도액 : 160만원
- 내용 : 구입과 대여를 합한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
- ※ 연간 160만원 초과 금액은 전액 본인 부담

● 급여기준

- 개수 제한 : 미끄럼방지 양말(6켢레), 미끄럼방지 매트·방지액(5개), 자세변환용구(5개), 안전손잡이(4개), 간이변기(2개)
- 이용 제한
 - 시설 급여 중인 자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불가
 - 의료기관 입원 중에는 침대(전동 및 수동),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복지용구 종류

〈구입 품목〉

품목 (내구연한)	용도	품목 (내구연한)	용도
	이동변기(5년) 화장실로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성인용보행기(5년) 보행이 불편한 경우 실내·외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보조 바퀴가 달린 기구
	목욕의자(5년) 편안한 목욕 및 자세유지를 돕는 목욕용 의자		안전손잡이 실내에 부착하는 지지용 손잡이와 화장실 거치용 손잡이 등으로 안전 사고 예방 및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용품
	미끄럼방지용품 실내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용품 (양말, 매트 등)		간이변기 와상상태, 소변조절 등이 어려운 경우 용변을 쉽고 안전 하게 볼 수 있는 용품
	지팡이(2년) 보행 시 도움을 얻기 위하여 짚는 지팡이		욕창예방방석(3년) 장시간 휠체어 등에 앉아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깔아두는 방석
	자세변환용구 장시간 누워있을 때 자세 및 위치변환을 보조하는 용품		

<대여 품목>

품목 (내구연한)	용도	품목 (내구연한)	용도
	수동휠체어(5년)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앉은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전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전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수동침대(10년) 누운 자세에서 혼자 일어나 앉지 못하는 경우 수동으로 상반신을 일으킬 수 있는 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3년) 체중을 분산하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장시간 한 자세로 누워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매트리스
	이동욕조(5년) 보행이 불편할 경우 편리하게 사용하는 이동식 욕조		목욕리프트(3년) 입욕 시 높낮이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목욕을 실시하기 위한 용품
	배회감지기(5년) 인지장애가 있는 수급자의 배회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		경사로(8년) 수동휠체어 또는 성인용보행기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이동 경로 확보를 위한 용품

》 노인요양시설 입소

● 시설 유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규모	입소자 10명 이상	입소자 5명 이상 9명 이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및 간호사실 - 침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 치매전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실, 화장실 및 세면장(목욕실) - 물리(작업)치료실 혹은 프로그램실 - 식당 및 조리실
	남녀 공용시설의 경우 남실과 여실을 각각 구분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10명 이하일 경우 1명) - 물리(작업)치료사 1명 - 영양보호사 : 입소자 2.5명당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 또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 영양보호사 : 입소자 3명당 1명

● 노인요양시설 입소 대상(신규 입소)

노인장기요양등급	대 상
1~2등급	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3~4등급	<p>등급판정위원회에서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5등급	<p>등급판정위원회에서 아래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고, 치매 관련 서류 내용이 일정 점수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현물급여

● 현물급여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근무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임(※ 가족간병과 다름)

● 제공 대상자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유사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정신장애인,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등 - 장애등록증이나 진단서 등 필요)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 수급 가능

● 요양 제공자

-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 수급자의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단,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할 수 있는지 사전 고려)

● 가족요양비 지급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4 노인장기요양 급여 비용(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수급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함

● 본인(수급자) 일부 부담금

- 일반수급자 :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급여는 비용의 20% 부담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본인 부담금 없음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적용 대상자 : 본인 부담금의 50%를 감경
 - ※ 감경대상자 : 희귀난치성질환자이거나 만성질환자이면서 차상위자,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저소득자

Tip 전액 본인 부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그 차액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 식사재료비, 이모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등 비급여항목 비용

● 급여 비용(전체 비용, 2017. 1. 1 기준)

1) 재가급여

(단위 : 원)

급여 내용	비용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10분 이상
방문요양 (방문당)	11,810	18,130	24,310	30,690	34,880	38,560	41,950	45,090

방문목욕 (방문당)	차량 이용 (차량 내 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이용
		72,540	65,410

방문간호 (방문당)	30분 미만	30분 이상~60분 미만	60분 이상
		72,540	65,410

주간간 보호 (1일당)	3시간~6시간	6시간~8시간	8시간~10시간	10시간~12시간	12시간 이상
		22,590~29,080	31,060~38,980	39,190~48,490	43,430~53,920

단기 보호 (1일당)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48,220	44,670	41,250	40,160

2) 시설급여

(단위 : 원/1일당)

시설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비고
노인요양시설	59,330	55,060	50,77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52,940	49,120	45,280	
치매전담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 등급에 따라 56,140 ~ 57,900원			

※ 본인 급여 비용 계산하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제도 소개 ➡ 급여비용 계산하기 ➡ 재가급여, 시설급여 선택 ➡ 항목 선택 ➡ 비용 계산

〈그림 3〉 재가급여 비용 계산(예시)

방문횟수 선택 (일 1회)

방문시간 선택 (1회 210분 이상)

본인 등급의 한도액 설정

본인 등급의 한도액 1,108,400원

수급자 유형 일반대상자(15%)

본인의 수급자 유형 선택 (일반/경감/수급자)

전체 비용 839,000 원

클릭

최종 본인 부담금 계산 125,880

서비스유형	서비스이용구간	방문횟수	급여비용
1일 방문횟수	1일 1회		
방문요양	1회	210분이상(방문달) 41	20
	선택2		선택2
	선택3		선택3
	2회	선택1	선택1
	선택2		선택2
	선택3		선택3
	3회	선택1	선택1
	선택2		선택2
	선택3		선택3
방문번호	선택	선택	
방문목적	선택	선택	
주야간 보호	선택	선택	
치매진달할 주야간 보호	선택	선택	
등급별 월한도액	2등급한도액 1,108,400원	수급자 유형	일반대상자(15%)
※ 본인부담금 = 총급여비용 × 수급자 유형 본인부담률은 수급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비용	839,000	한도초과금액	0
공단부담금	713,120	본인부담금	125,880

- 단기보호 급여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초과금액임

〈그림 4〉 시설급여 비용 계산(예시)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calculation tool for facility allowance costs. Key elements and annotations include:

- 연도와 월 선택 (Year and Month Selection):** Year is set to 2017 and month to 10.
- 시설유형 선택 (Facility Type Selection):** Selected as '노인요양시설' (Elderly Care Facility).
- 수급자 유형 (Beneficiary Type):** Selected as '일반대상자(20%)' (General beneficiary, 20%).
- 수급자 선택 (Beneficiary Selection):** Selected as '노인요양시설(현행법)' (Elderly Care Facility, current law).
- 이용일수 선택 (Usage Days Selection):** A dropdown menu is open, showing options from 1 to 14 days.
- 본인의 요양등급 선택 (Personal Care Level Selection):** A dropdown menu is open, showing care levels 1 through 5 with their respective monthly costs.
- 클릭 (Click):** The '계산하기' (Calculate) button is highlighted.
- 총 비용과 본인부담금 등 계산 (Total Cost and Personal Contribution Calculation):** The summary table at the bottom shows:

총급여비용	890,620	공단부담금	664,500	본인부담금	166,120
-------	---------	-------	---------	-------	---------

Additional text in the interface includes: '시설 = 총급여비용 X 수급자 유형' (Facility = Total Allowance Cost X Beneficiary Type) and a note at the bottom: '- 장기요양급여비용 계산프로그램은 예상 비용이므로 실제 장기요양급여계약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The long-term care allowance cost calculation program is an estimated cost, so a difference may occur when actually signing a long-term care allowance contract.)

5 가족 간병

● 가족간병이란?

- 요양보호자 자격을 가진 가족에 의해 방문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가족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음

● 가족 요양보호사의 범위

- 수급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가족관계 성립 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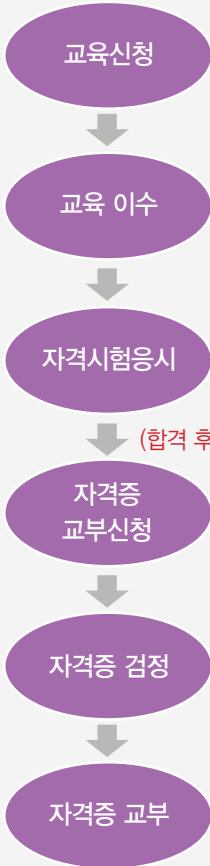
● 가족 간병 시 비용

- 가족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는 월 20일 범위 내에서 1일 60분의 급여비용만 산정
- 다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와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과 같은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월 20일을 초과하여 1일 90분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
- ※ 만약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급여비용을 제공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하기

■ 취득 절차



- 신청 → 요양보호사 교육원
- 신청자격 : 나이, 학력 제한 없음
- 수강료 개별 납부

- 이론(80), 실기(80), 실습(80) : 총 240시간

- 한국보건직업인국가시험원(연3회 실시)

(합격 후)

- 광역 시·도에 제출
- 교육원의 교육과정 수료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각각 필기시험 60점, 실기시험 60점 이상 합격한 자에 한함

- 광역시, 도지사가 국가시험 합격자의 명단, 제반 서류를 검정하여 발급

- 광역시·도 → 수료자에게 교부

■ 자격요건 및 교육 시간

구분	교육 시간	교육 대상
신규	240시간 (이론 80, 실기 80, 실습 80)	연령, 경력, 학력 제한 없음
경력자	160시간 (이론 80, 실기 40, 실습 40)	간병 관련 종사자로 1년 이상 인정되는 자
국가자격 소지자	40~50시간 (이론 및 실기 32~42, 실습 8)	간호사(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Q&A

Q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세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A) 장기요양급여의 중복 수급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동일 시간대에 중복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Q2) 요양인정등급을 받으면 모든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지?

A) 1~5등급 수급자는 동일하게 연한도액 160만원 이내 복지용구 사용이 가능하며, 복지용구 급여확인서에 사용가능한 품목으로 정해진 품목만 이용할 수 있음

Q3)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 정해진 품목이 아닌 복지용구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A) 신체기능상태의 변화나 수발환경에 변화가 있어 복지용구 품목 변경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사에 추가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음

Q4)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입소보증금을 내는지?

A)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Q5) 부부 중 한명은 1~2급, 한 명은 3등급인 경우 시설에 같이 입소할 수 있는지?

A) 1~2등급 수급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등급 수급자는 가정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부부가 함께 시설입소를 이용할 수 있음

Q6)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등 단기간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병원으로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는지?

A) “의료기관(공공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수급자는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정

Q&A

Q7) 수급자의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A)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에서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거주지 외 지역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수급권자가 소속된 시·군·구청장의 입소·이용 승인을 얻어야 함

Q8)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등급이 취소 되는지?

A)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급여 이용이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 사례

■ 김노원(가명, 남, 62세)님은

결혼 후 의류 원단 유통업에 종사하던 중, 200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좌측 편마비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발병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자녀들은 어머니와 생활) 혼자 생활하였으며, 가족상황과 경제적 요건이 감안되어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다.

2008년 8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록하여 하루 3시간 정도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2014년에는 혼자 계단을 내려오다 낙상하여 좌측 다리를 더 심하게 다쳤으나 4개월 정도 재활치료 후 많이 회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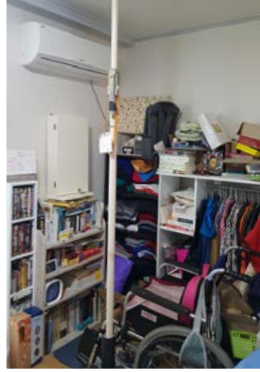
현재 김 노원님은 뇌병변장애 2급과 노인장기요양보험 3급에 등록되어 있으며, 매일(평일, 주 5회) 3시간씩 방문요양서비스와 2주에 한번 씩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병원 진료 등 장거리 외출 시에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한다.

■ 그가 사는 집은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약 8평 정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록 후 필요한 복지용구들을 구입 혹은 대여하여 설치하였는데, 인근 재가급여센터에서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복지용구들을 설치해 주었다고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라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없었다.



전동침대와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수직 봉



미끄럼방지용 매트

그가 대여하여 사용하는 전동침대에는 욕창방지용 매트리스가 깔려 있으며, 침대에서 일어나 걸어 나오기 쉽도록 침대 옆에는 수직 봉이 설치되어 있다. 침실과 주방, 욕실 등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았으며, 벽면에는 안전손잡이를 곳곳에 설치하였다.



벽면형 안전손잡이



■ 오후 2시경,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였다.

전문 자격증을 가진 요양보호사는 김노원님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재가급여 센터에서 파견되었다. 김노원님이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센터에 연락하였으며, 센터 직원은 먼저 김노원님의 집을 방문하여 그의 장애 상태와 도움이 필요한 내용, 장기요양보험 증서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 후 요양보호사와 함께 다시 그의 집을 방문하여 간단히 면접을 진행하였다. 김노원님은 집안 생활 도움과 외출 동반 등을 원하였으며, 요양보호사의 성별이나 나이는 상관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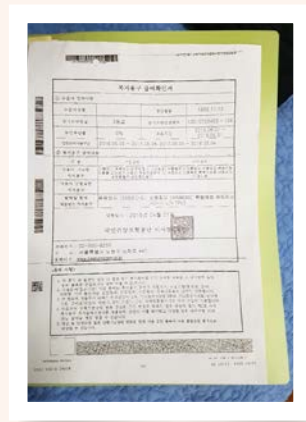
요양보호사와는 특별히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나, 그 동안 요양보호사가 몇 번 바뀌었는데 주로 요양보호사 개인사정 때문이었다고 한다. 갑자기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인증서 및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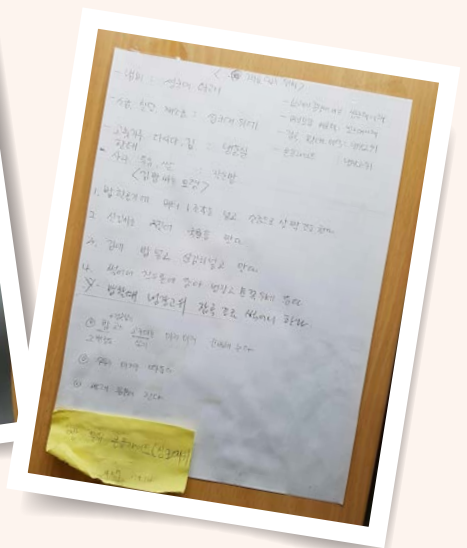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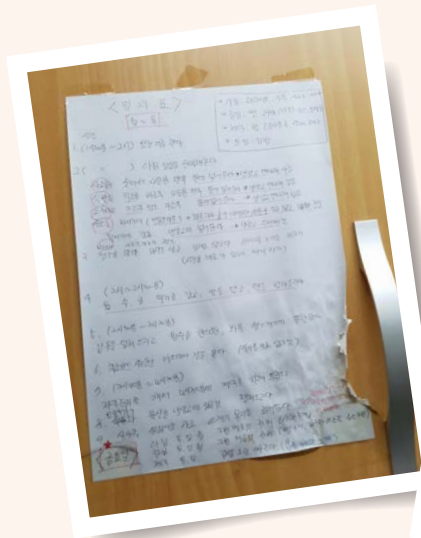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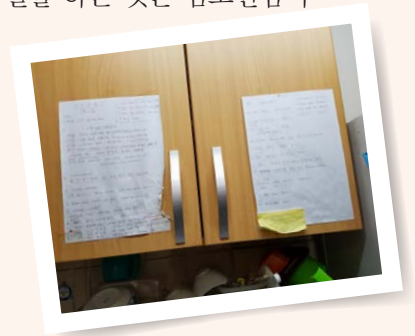


요양보호사가 못 오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대리 근무자를 보내주고, 계속 오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해 준다고 한다.

지금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센터에서 직원(사회복지사)이 방문하여 그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요양보호사 활동에는 문제없는지, 다른 필요사항은 없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고 한다.

■ 요양보호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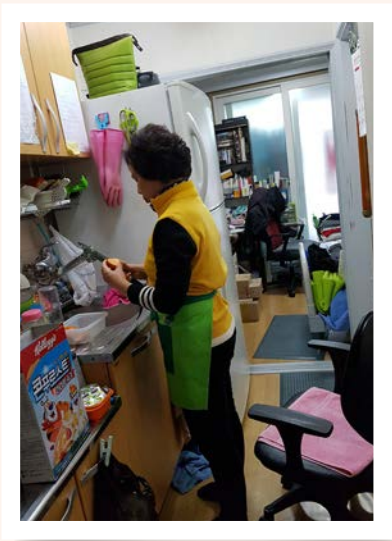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부터 5시까지 방문하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집안 일이다. 먼저 싱크대에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청소와 빨래 등을 하며, 김노원님의 식사를 위한 요리를 한다. 요리를 위해 시장을 봐가지고 오는 것도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이다. 요양보호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집안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해야 할 일과와 요리 재료의 위치 등을 적은 종이를 싱크장 위에 붙여놓은 점이 특이했다. 요양보호사가 청소나 요리 등의 집안일을 하는 것은 김노원님이 혼자 사는 독거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만약 가족이 함께 산다면 요양보호사의 활동은 목욕, 식사보조, 외출 도움 등 장애인의 개인적인 활동에만 허용되며, 청소나 세탁, 요리 등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도록 제한될 것이다.



요양보호사의 하루 일과표와 재료 있는 위치를 적은 안내장

간단히 집안 정리를 끝내고 김노원님과 요양보호사는 외출을 한다. 주 3일(월, 수, 금)은 인근 개인 재활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2일(화, 목)은 노원보건소 월계지소에서 물리치료와 자율운동 등을 한다. 물론 요양보호사가 외출준비 및 이동, 치료보조 등을 돕는다. 외출 길에 그가 요양보호사에게 통장과 비밀번호를 말해주고 은행 일을 맡긴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줘도 되냐는 염려스런 말에, 그는 서로 배려하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처음 만나서는 서로 맞춰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후에는 서로 배려하고 믿어야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었다.

김노원님은 방문요양 외에도 2주에 한번 방문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인근의 다른 재가급여센터다. 물론 현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도 받을 수 있지만, 이전부터 방문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던 센터의 사람들과 특별한 인연으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김노원님은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하고 목욕차량이 조금 좁아서 방문목욕 차량이 아니라 일반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방문요양 및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김노원님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한다.



가사 도움



외출 도움

■ 김노원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었더라면 본인은 살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몸은 불편하고, 직장도 잃고, 또 가족과도 헤어진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말이다. 임대아파트 분양,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등의 혜택도 꼭 필요했지만, 매일 매일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러 오고, 어디선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염려하는 곳이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큰 위안과 삶의 활력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절대 한국을 떠날 수 없다고 했다!!!!



퇴원준비 가이드북
**노인장기요양보험
활용하기**

발행일 2017년 12월

발행인 이범석

편집인 김은주, 윤정아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전 화 (02) 901-1898 팩 스 (02) 901-1899

관리번호 H-14-17-04

국제표준간행물번호(ISBN) 978-89-6810-250-9 (13330)